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강길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63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24.

발의자 : 강길부 · 김석기 · 홍문종
홍의락 · 오제세 · 엄용수
김수민 · 김삼화 · 정유섭
정우택 · 장석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
국유 ·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· 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
항만이 규정되어 있어, 국유 ·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
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(안 제10조).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0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